



**ACICA**

Australian Centre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ww.acica.org.au](http://www.acica.org.au)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

**(긴급 중재인 규정을 포함하는)**

**중재규칙**

**2011년 8월 1일**

**한국어판**

**ACICA Arbitration Rules incorporating the Emergency Arbitrator Provisions**

**Korean Translation**

#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 중재규칙

2011년 8월 1일

표준 중재조항.....	1
제 1 장: 총칙.....	1
1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 중재규칙 .....	1
2    적용범위 .....	1
3    통지, 기간의 산정.....	1
4    중재 통지 .....	2
5    중재 통지에 대한 답변 .....	3
6    대리 및 조력.....	4
7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 시설 및 지원.....	4
제 2 장: 중재판정부의 구성.....	4
8    중재인의 수.....	4
9    단독 중재인 선정.....	4
10   3 인의 중재인들 선정 .....	4
11   복수 당사자 분쟁에서의 중재인 선정.....	5
12   중재인에 관한 정보.....	5
13   중재인 기피.....	5
14   중재인 기피에 관한 절차.....	5
15   중재인 교체.....	6
16   중재인이 교체된 경우에 심리의 반복.....	6
제 3 장: 중재절차.....	6
17   일반규정 .....	6
18   비밀유지 .....	7
19   중재지.....	7
20   언어.....	8
21   신청서.....	8
22   답변서.....	8
23   신청 또는 답변의 변경 .....	9
24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	9
25   추가 서면 .....	9
26   기간.....	10
27   증거 및 심리.....	10
28   임시적 보전처분.....	10

29	의무 해태 .....	11
30	심리의 종결.....	11
31	권리 포기 .....	12
<b>제 4 장: 판정 .....</b>		<b>12</b>
32	의사결정 .....	12
33	판정의 형식과 효력.....	12
34	준거법, 우의적 중재인 .....	12
35	화해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절차종료.....	13
36	판정의 해석.....	13
37	판정의 정정.....	13
38	추가 판정 .....	13
39	비용.....	14
40	중재판정부 수당.....	14
41	비용의 분담.....	15
42	비용의 예납.....	15
<b>제 5 장: 일반원칙.....</b>		<b>16</b>
43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의 결정.....	16
44	중재판정부의 책임 .....	16
<b>부칙 A: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의 요금 .....</b>		<b>1</b>
1	등록요금 .....	1
2	관리요금 .....	1
3	긴급 중재인 수당.....	1
<b>별표 1 .....</b>		<b>2</b>
<b>별표 2 .....</b>		<b>2</b>
1	긴급 임시적 보전처분 신청 .....	2
2	긴급 중재인 선정.....	3
3	긴급 임시적 보전처분에 관한 결정 .....	3
4	긴급 임시적 처분의 준수 .....	4
5	중재판정부 선정 후 권한.....	4
6	비용.....	4
7	기타.....	5
<b>부칙 B: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의 연락처 세부사항 .....</b>		<b>6</b>

## 표준 중재조항

이 계약의 존부, 유효성 또는 종료에 관한 어떠한 의문을 포함하여,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된다. 중재지는 호주 시드니[또는 다른 도시로 지정 가능]로 한다. 중재언어는 영어[또는 다른 언어로 지정 가능]로 한다. 중재인의 수는 1 인[또는 3 인으로 지정 가능, 또는 이 문장을 삭제하고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 중재규칙 제 8 조에 의해서 정할 수 있음]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본래 영어로 작성되었다. 이 규칙의 영어판과 다른 언어판 간에 불일치 또는 해석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판이 우선한다.”*

## 제 1 장: 총칙

### 1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 중재규칙

이 규칙("규칙")은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ACICA")의 중재규칙이고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 중재규칙"이라고 약칭될 수 있다.

### 2 적용범위

2.1 당사자들이 분쟁은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에 회부된다는 것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그 분쟁은 중재를 개시하는 날에 시행되는 이 규칙에 따라 해결된다. 다만,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이 규칙과 다른 내용을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2 이 규칙이 중재에 적용된다. 다만, 이 규칙이 당해 중재에 적용되는 법의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강행규정이 우선한다.

2.3 이 규칙을 선택함으로써 당사자들은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표준 법의 시행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 3 통지, 기간의 산정

3.1 이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지, 송부 또는 제안을 포함한 모든 통지는 수신인 또는 수신인의 거주지,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주소에 물리적으로 전달되거나,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이러한 연락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거주지 또는 영업소에 물리적으로 전달된 때에 수령된 것으로 본다. 통지는 상기와 같이 전달된 날에 수령된 것으로 본다.

3.2 이 규칙에 의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간은 통지, 고지, 제안 또는 기타 송부가 수령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그러한 기간의 마지막 날이 수신인의 거주지 또는 영업소에서

공휴일이거나 휴무일인 경우, 그 기간은 그 이후의 첫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기간의 진행 중에 발생하는 공휴일 또는 휴무일은 기간의 산정 시에 포함된다.

3.3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시간은 중재지 현지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3.4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는 중재 통지, 중재 통지에 대한 답변 및 중재판정부 구성과 관련하여 이 규칙 또는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에 의해 부여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4 중재 통지

4.1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중재 통지서 2 부 또는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가 지정하는 부수 만큼을 추가하여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이와 동시에 부칙 A 에 명시된 대로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의 등록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4.2 규칙 제 4 조 제 5 항을 적용하여, 중재절차는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가 중재 통지서 또는 등록요금을 수령한 일자 중 보다 나중의 일자에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4.3 중재 통지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a) 분쟁이 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요구;
- (b) 당사자들 및 그들의 대리인의 성명, 우편 주소, 전화와 팩스 번호 그리고 (있는 경우) 전자우편 주소;
- (c) 중재조항 또는 원용되는 별도의 중재합의서 사본 1 부;
- (d) 분쟁 발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계약의 내용;
- (e) 신청의 일반적인 성격과, 있는 경우, 관련된 분쟁금액의 명시;
- (f) 신청취지; 그리고
- (g)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수에 관하여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중재인의 수(즉, 1 인 또는 3 인)에 관한 제안.

4.4 중재 통지서는 또한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 (a) 규칙 제 9 조 제 1 항에 따른 단독 중재인 선정에 관한 신청인의 제안;
- (b) 규칙 제 10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인 선정에 관한 통지; 그리고
- (c) 규칙 제 21 조에 규정된 신청서.

4.5 중재 통지서가 불완전하거나 요구된 부수 만큼 제출되지 않는 경우,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는 신청인에게 적절한 기간 내에 하자를 치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하자가 치유될 때까지

중재절차의 개시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의 재량권은 별표 2에 상술된 긴급 임시적 보전처분에 관한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6 규칙 제 4 조 제 5 항을 적용하여,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는, 중재 통지서 접수 시에, 규칙 제 4 조 제 3 항 (b)호에 규정된 상대방 당사자에게 중재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5 중재 통지에 대한 답변

5.1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로부터 중재 통지서 수령 후 30 일 이내에 신청인이 그 신청을 구하는 상대방 각 당사자(이하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들"이라 한다)는 중재 통지에 대한 답변서 2 부 또는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가 지정하는 부수 만큼을 추가하여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5.2 중재 통지에 대한 답변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a) 피신청인 및 그의 대리인의 성명, 우편 주소, 전화와 팩스 번호 그리고 (있는 경우) 전자우편 주소;
- (b) 이 규칙에 의해 구성되는 중재판정부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여하한 항변;
- (c) 중재 통지서에 개진된 세부사항에 대한 피신청인의 의견;
- (d) 중재 통지서에서 구하는 신청취지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 그리고
- (e)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수에 관하여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중재인의 수에 관한 피신청인의 제안.

5.3 중재 통지에 대한 답변서는 또한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 (a) 규칙 제 9 조 제 1 항에 따른 단독 중재인 선정에 관한 피신청인의 제안;
- (b) 규칙 제 10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인 선정에 관한 통지;
- (c) 규칙 제 22 조에 규정된 답변서; 그리고
- (d) 그 계약과 관련하여거나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반대신청 또는 상계를 목적으로 하는 신청. (규칙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은 그러한 반대신청 또는 상계에 적용된다.)

5.4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는 신청인에게 중재 통지에 대한 답변서 및 그에 포함된 증거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5.5 등록요금이 납입되고 모든 중재인들이 선정되었을 때에,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는 중재판정부에 당해 관련 자료를 송달하여야 한다.

## 6 대리 및 조력

당사자들은 그들이 선택한 자에 의해서 대리되거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대리하거나 조력할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당사자 및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7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 시설 및 지원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는, 중재판정부 또는 어느 일방 당사자의 요청으로, 중재판정부의 심리 참석을 위한 적합한 숙박시설, 사무지원 및 통역시설을 포함하여, 중재절차 수행을 위하여 요구될 수 있는 시설 및 지원을 이용 가능하게 하거나 구비하여야 한다.

## 제 2 장: 중재판정부의 구성

### 8 중재인의 수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수(즉, 1 인 또는 3 인)에 관하여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이 중재 통지서를 수령한 후 15 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이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때에는,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가 모든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인의 수를 결정한다.

### 9 단독 중재인 선정

9.1 단독 중재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는 단독 중재인으로 활동할 1 인 이상의 후보자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9.2 상대방 당사자가 규칙 제 9 조 제 1 항에 따른 제안을 수령한 후 30 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단독 중재인 선정에 관하여 합의하고 그 합의에 관한 서면 증거를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가 단독 중재인을 선정한다.

9.3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는, 단독 중재인을 선정함에 있어, 가급적 독립적이고 공정한 중재인이 선정되어야 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고 당사자들 국적 이외의 국적을 가진 중재인이 선정될 여지가 있는지도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 10 3 인의 중재인들 선정

10.1 3 인의 중재인들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각 당사자가 중재인 1 인을 선정한다. 이와 같이 선정된 2 인의 중재인들이 당해 중재판정부의 의장 중재인으로 활동할 제 3 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10.2 중재인 선정에 관한 일방 당사자의 통지를 수령한 후 30 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가 자신이 선정한 중재인에 관하여 그 일방 당사자(제 1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일방 당사자(제 1 당사자)는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에 제 2 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는, 제 2 의 중재인을 선정함에 있어, 가급적 독립적이고 공정한 중재인이 선정되어야 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10.3 제 2 의 중재인을 선정한 후 30 일 이내에 그 2 인의 중재인들이 의장 중재인 선정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가 의장 중재인을 선정한다.

## 11 복수 당사자 분쟁에서의 중재인 선정

11.1 규칙 제 9 조 및 제 10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복수의 신청인들 또는 복수의 피신청인들이 공동으로 행위하고 그 공동행위 합의에 관한 서면 증거를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에 제출하지 않는 한, 복수의 신청인들이건 복수의 피신청인들이건 간에, 복수의 당사자들의 행위는 어떠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11.2 3 인의 중재인들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복수의 신청인들 또는 복수의 피신청인들이 중재인 1 인을 선정함에 있어 공동으로 행위하지 않는 경우, 모든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 구성에 대한 특별한 방법에 관하여 서면으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관한 서면 증거를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에 제출하지 않는 한,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가 중재판정부의 각 중재인을 선정하고 그들 중에서 의장 중재인으로 활동할 1 인을 지명한다.

## 12 중재인에 관한 정보

12.1 1 인 이상의 후보자가 중재인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제안되는 경우, 각 후보자의 성명, 우편 주소, 전화와 팩스 번호 그리고 (있는 경우) 전자우편 주소가 제공되어야 하고 각 후보자의 상세한 자격사항과 함께 국적이 표시되어야 한다.

12.2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가 규칙 제 9 조 내지 제 11 조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는 경우,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는 중재인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어느 일방 당사자로부터 요구할 수 있다.

## 13 중재인 기피

13.1 장차 중재인으로 선정될 자는 그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만한 사정을 중재인 선정 여부와 관련하여 자신과 접촉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중재인으로 선정되거나 선택된 이후에도 상기와 같은 사정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러한 사정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장차 중재인으로 선정될 자 또는 기 중재인으로 선정된 자가 당사자에게 제공한 모든 서면 고지는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에 송부되어야 한다.

13.2 중재인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심을 야기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중재인은 기피될 수 있다.

13.3 당사자는 자신이 선정한 중재인에 대하여는 오직 그 선정 후에 알게 된 사유로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14 중재인 기피에 관한 절차

14.1 중재인을 기피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그 중재인 선정에 관하여 통지된 후 15 일 이내에 또는 규칙 제 13 조에 규정된 사정을 알게 된 후 15 일 이내에 기피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14.2 기피신청은 다른 당사자, 기피의 대상이 된 중재인, 중재판정부의 나머지 중재인들 및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에 통지되어야 한다. 기피신청은 서면으로 하되 기피사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 14.3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는 그 기피신청에 동의할 수 있다. 기피신청을 받은 중재인 역시, 그 기피신청 후에, 스스로 사임할 수 있다. 위의 두 경우 모두 기피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비록 어느 한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받은 중재인 선정 절차 동안에 선정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거나 그 선정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두 경우에 대체 중재인 선정에 있어서는 규칙 제 9 조 내지 제 13 조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
- 14.4 상대방 당사자가 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그 기피신청을 받은 중재인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가 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14.5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가 기피신청을 인정하는 경우, 대체 중재인은 규칙 제 9 조 내지 제 13 조에 규정된 대로 중재인 선정 또는 선택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선정 또는 선택된다.

**15 중재인 교체**

- 15.1 중재절차 진행 중에 중재인이 사망 또는 사임하는 경우, 대체 중재인은 교체되는 중재인 선정 또는 선택에 적용되었던 규칙 제 9 조 내지 제 13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선정 또는 선택된다.
- 15.2 중재인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중재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전(前) 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재인 기피 및 교체에 관한 절차가 적용된다.

**16 중재인이 교체된 경우에 심리의 반복**

중재판정부가 다시 구성된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후에, 중재판정부가 다시 구성되기 전에 있었던 이전의 절차가 반복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3 장: 중재절차**

**17 일반규정**

- 17.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각 당사자에게 사건에 관하여 진술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한, 이 규칙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 17.2 중재판정부는, 어느 일방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문가 증인을 포함하여 증인에 의한 증거 제출 또는 구두 논쟁을 위한 심리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러한 신청이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심리를 개최할 것인지 또는 서면과 기타 자료에 근거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17.3 오직 의장 중재인만이, 또는 중재판정부가 권한을 주는 경우, 중재판정부의 다른 중재인이 절차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은 중재판정부 전원 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17.4 일방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 모든 서면 또는 정보를 다른 당사자에게도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 18 비밀유지

18.1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모든 심리는 비공개로 개최된다.

18.2 당사자들, 중재판정부 및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의 존재를 포함하여) 중재와 관련한 모든 사항, 판정, 중재를 위하여 만들어진 자료와 중재절차에서 기타 당사자가 제출한 공공저작물이 아닌 서면을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고 당사자들로부터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a) 관할법원에 신청을 하려는 경우;

(b) 판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국가의 법원에 신청을 하려는 경우;

(c) 정당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명령에 따르는 경우;

(d) 당사자를 구속하는 어떠한 국가의 법에 의해 공개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e) 감독기관에 의해 공개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

18.3 규칙 제 18 조 제 2 항에 의하여 공개하려는 당사자는 공개하기 전 상당한 기간 내에 (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중재판정부,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 및 다른 당사자에게 또는 (중재 종료 후에 공개하려는 경우)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 및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하려는 명세와 그 이유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18.4 증인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중재에서 얻어진 증거 또는 기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증인에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증인이 비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 19 중재지

19.1 당사자들이 중재지에 관하여 사전에 합의하지 아니하고 중재 개시 후 15 일 이내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는 호주 시드니로 한다.

19.2 중재판정부는 (중재지 또는 다른 장소에서) 중재절차가 진행될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중재판정부는, 중재사건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여기는 장소에서 증인 심문을 위한 심리 및 중재판정부 구성원들 간 협의를 위한 판정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9.3 중재판정부는 동산, 기타의 재산 또는 문서의 조사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여기는 장소에서 검증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그러한 검증에 입회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19.4 판정은 중재지에서 내려진다.

## 20 언어

20.1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들)를, 중재판정부 선정 후 즉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러한 결정은 신청서, 답변서, 추가 서면 및, 구두 심리가 개최되는 경우, 당해 심리에서 사용될 언어(들)에도 적용된다.

20.2 중재판정부는, 의견, 주장 등의 (서면 또는 구두) 진술, 신청서 또는 답변서에 첨부된 문서, 및 중재절차 진행 중에 제출된 추가 문서 또는 증거서류가 원어로 된 경우, 이에 당사자들이 합의한 또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한 언어(들)로의 번역문을 첨부할 것(또는 이를 번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21 신청서

21.1 신청서가 중재 통지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 신청인은,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기간 내에, 피신청인, 각 중재인 및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당해 계약서 사본 및 중재합의가 그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해 중재합의서 사본이 그에 첨부되어야 한다.

21.2 신청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a) 당사자들 및 그들의 대리인의 성명, 우편 주소, 전화와 팩스 번호 그리고 (있는 경우) 전자우편 주소;
- (b) 신청을 뒷받침하는 사실의 진술;
- (c) 쟁점; 그리고
- (d) 신청취지.

21.3 신청인은 관련 있다고 여기는 모든 문서를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제출할 예정인 문서 또는 기타 증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 22 답변서

22.1 답변서가 중재 통지에 대한 답변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 피신청인은,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인, 각 중재인 및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22.2 답변서는 신청서의 (규칙 제 21 조 제 2 항) (b), (c) 그리고 (d)호에 대하여 답변되어야 한다. 피신청인은 자신의 답변을 지지하는 문서를 답변서에 첨부하거나 제출할 예정인 문서 또는 기타 증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2.3 중재 통지에 대한 답변서에 제기되지 않은 한, 피신청인은 답변서 상에, 또는 중재판정부가 지연이 사정상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절차의 나중 단계에서,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당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반대신청 또는 상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22.4 규칙 제 21 조 제 2 항 (b)호 내지 (d)호의 규정은 반대신청 및 상계를 목적으로 제기된 청구에 적용된다.

### 23 신청 또는 답변의 변경

중재판정부가 신청 또는 답변을 변경하거나 보완함에 있어서의 지연 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한 권리 침해 또는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러한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중재절차 진행 중에 어느 일방 당사자는 자신의 신청 또는 답변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변경된 신청이 중재조항 또는 별도의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방식으로 신청을 변경할 수 없다.

### 24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24.1 중재판정부는, 중재조항 또는 별도의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관한 이의를 포함하여,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의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24.2 중재판정부는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의 존부 또는 유효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이 규칙 제 24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이 규칙에 의한 중재를 가능하게 하는 중재조항은 당해 계약의 다른 조건들로부터 독립한 합의로 취급된다. 중재판정부가 당해 계약이 무효라고 결정하더라도 그 중재조항까지 법률상 무효로 되지는 아니한다.

24.3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항변은 규칙 제 22 조에 규정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또는, 반대신청과 관련해서는,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되어야 한다.

24.4 일반적으로,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관한 항변에 대하여 선결문제로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하여 최종 판정에서 그러한 항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

### 25 추가 서면

중재판정부는, 신청서 및 답변서 외에, 당사자들이 추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서면을 통지하기 위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6      **기간**

(신청서 및 답변서를 포함하여) 서면의 통지를 위하여 중재판정부가 정하는 기간은 45 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연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7      **증거 및 심리**

27.1      각 당사자는 자신의 신청 또는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근거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27.2      중재판정부는 중재 개시 당시에 시행되는 *국제 중재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한 국제변호사협회 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려하여야 한다.

27.3      당사자들의 합의 및 이 규칙은 (이 순서대로) *국제 중재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한 국제변호사협회 규칙*과 불일치하는 규정에 대하여 항상 우선한다.

28      **임시적 보전처분**

28.1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 (a)      당사자는 별표 2 에 제시된 규정에 따라 중재판정부 구성 전에 선정된 중재인(긴급 중재인)이 긴급 임시적 보전처분을 내리도록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 (b)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 시에, 임시적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판정의 형식이거나 이유가 기재된 (명령의 형식과 같은) 다른 형식으로, 그리고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으로 그러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그 처분의 집행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8.2      임시적 보전처분은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명하는 임시적인 처분이다:

- (a)      분쟁의 종결 시까지 현상을 유지하거나 복구하는 조치
- (b)      현재의 또는 임박한 손해를 예방하거나 야기할 만한 행위를 저지하는 조치
- (c)      추후 판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보전하는 조치
- (d)      분쟁해결에 관련될 수 있고 중요할 수 있는 증거를 보전하는 조치
- (e)      어느 당사자의 법적 또는 기타 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조치

28.3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을 명하기에 앞서, 다음 각 호를 중재판정부에 소명하여야 한다:

- (a)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는 점;
- (b)      그러한 손해가, 처분이 허가되는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예상되는 손해보다 상당히 더 크다는 점; 그리고

- (c) 그 신청하는 당사자가 본안에 대하여 승소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점, 다만 이러한 가능성에 관한 판단은 차후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재판정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8.4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28.5 그 신청 당사자는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게 된, 또는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을 허가하게 된, 기초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 28.6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 시에 언제든지 중재판정부 자신의 임시적 처분을 변경, 정지 또는 종료할 수 있다.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사전 통지 시에 중재판정부 자신의 임시적 처분을, 직권으로, 변경, 정지 또는 종료할 수 있다.
- 28.7 중재판정부가 처분이 허가되지 않았어야 했다고 추후에 결정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신청 당사자가 그 처분에 의해 명을 받은 당사자에게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액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
- 28.8 이 규칙 제 28 조에 의한 중재판정부의 권한은 관할법원 또는 기타 사법기관에 임시적 처분을 신청할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중재판정부 구성 후에 그러한 처분에 관한 신청 및 명령은 그 신청인에 의해 중재판정부, 모든 다른 당사자들 및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에, 서면으로,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

## 29 의무 해태

- 29.1 신청인이,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간 내에, 충분한 이유를 소명하지 않고 신청서를 통지하지 못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의 종료를 명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간 내에, 충분한 이유를 소명하지 않고 답변서를 통지하지 못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의 속행을 명하여야 한다.
- 29.2 당사자가, 이 규칙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통지 받았으나, 충분한 이유를 소명하지 않고 심리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29.3 당사자가, 서면 증거를 제출하여 줄 것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요청 받았으나, 충분한 이유를 소명하지 않고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때까지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30 심리의 종결

- 30.1 중재판정부는 추가적으로 입증할 것이 있는지, 신문할 증인이 있는지, 진술할 것이 있는지를 당사자들에게 조회해 볼 수 있고, 이러한 사항들이 없는 경우, 심리종결을 선언할 수 있다.
- 30.2 중재판정부는, 예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정을 내리기 전에는 언제든지 심리를 재개할 것을,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 시에, 결정할 수 있다.

31      **권리 포기**

이 규칙의 규정 또는 이 규칙에 의한 요구사항이 준수되지 않았음을 알고도 그러한 불일치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중재절차를 진행한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 4 장: 판정**

32      **의사결정**

중재판정부가 3 인의 중재인들로 구성되는 경우, 중재판정부의 판정 또는 기타 결정은 과반수의 중재인들에 의해 내려진다. 어떠한 쟁점에 관하여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없는 경우, 의장중재인의 의견이 우선한다.

33      **판정의 형식과 효력**

33.1      중재판정부는, 종국판정을 내리는 것 외에, 임시판정, 중간판정, 또는 부분판정을 내릴 수 있다.

33.2      판정은 서면으로 내려지고 최종적이며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당사자들은 지체 없이 판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33.3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판정이유 기재는 생략된다고 합의하지 않은 한,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33.4      중재인들은 판정이 내려진 일자와 (규칙 제 19 조 제 4 항에 따른) 지역을 기재하고 판정에 서명하여야 한다. 일부 중재인이 판정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 과반수의 중재인들 또는 (과반수가 안되는 경우) 의장중재인이 그 판정에 서명이 누락된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33.5      중재판정부는 중재인들이 서명한 판정문을 당사자들 및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에 송부하여야 한다.

33.6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판정문을 송부하기 전에,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에 지급되어야 할 미납된 비용이 있는지를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에 조회하여야 한다. 판정문은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가 지급되어야 할 비용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때까지 당사자들에게 송부되어서는 아니 된다.

33.7      판정이 내려지는 지역의 중재법이 중재판정부가 판정문을 제출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법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이러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34      **준거법, 우의적 중재인**

34.1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실체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에 의한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용된다고 인정하는 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34.2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법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의적 중재인으로서 또는 형평과 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34.3 중재판정부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조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거래에 적용되는 상관습을 고려하여야 한다.
- 35 화해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절차종료**
- 35.1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들이 분쟁의 화해에 관하여 합의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의 종료를 명하거나, 쌍방 당사자들이 요청하여 중재판정부가 승낙하는 경우, 화해 내용에 대하여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그 화해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판정에 대하여 이유를 기재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35.2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중재절차의 계속이 규칙 제 35 조 제 1 항에 규정된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의 종료를 명하려는 의사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중재절차의 종료를 명할 권한을 가진다.
- 35.3 중재판정부는, 중재인들이 서명한, 중재절차의 종료 명령문 또는 화해 내용의 중재판정문을 당사자들 및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에 송부하여야 한다. 화해 내용의 중재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규칙 제 33 조 제 2 항 및 제 4 항 내지 제 7 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 36 판정의 해석**
- 36.1 어느 일방 당사자는, 판정문 수령 후 30 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함과 함께,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을 내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36.2 해석은 그 신청서 수령 후 45 일 이내에 서면으로 내려져야 한다. 해석은 판정의 일부를 구성하고 규칙 제 33 조 제 2 항 내지 제 7 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 37 판정의 정정**
- 37.1 어느 일방 당사자는, 판정문 수령 후 30 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함과 함께, 중재판정부에 판정문 상의 오산, 오기 내지는 오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오류를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판정문 송부 후 30 일 이내에 직권으로 그러한 정정을 할 수 있다.
- 37.2 그러한 정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규칙 제 33 조 제 2 항 내지 제 7 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 38 추가 판정**
- 38.1 어느 일방 당사자는, 판정문 수령 후 30 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함과 함께, 중재판정부에 중재절차에서 주장되었으나 판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에 대한 추가 판정을 내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8.2 중재판정부가 추가 판정에 관한 신청이 정당하고 추가적인 심리 또는 증거 없이 누락된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그 추가 판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후 60 일 이내에 추가 판정을 내려야 한다.

38.3 추가 판정이 내려지는 때에는, 규칙 제 33 조 제 2 항 내지 제 7 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 39 비용

중재판정부는 판정문 상에 중재비용을 정하여야 한다. "중재비용"은 오직 다음 각 호의 비용만을 포함한다:

- (a) 각 중재인 별로 분리되어 기재되고, 규칙 제 40 조에 따라 정해지는, 중재판정부 수당;
- (b) 중재인의 여비 (비즈니스급 항공운임) 및 기타 합당한 경비;
- (c) 중재판정부가 요구한 전문가 의견 및 기타 조력 비용;
- (d) 중재판정부가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중인의 여비 (비즈니스급 항공운임) 및 기타 합당한 경비;
- (e) 중재판정부가 비용액이 합당하다고 결정하는 범위에 한해서, 중재절차 중에 청구된 경우, 승소한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한 법률 및 기타 비용;
- (f)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의 관리요금;
- (g) 규칙 제 7 조 및 제 42 조 제 5 항에 따라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가 제공한 시설 및 지원에 대한 비용;
- (h)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의 등록요금; 그리고
- (i) 규칙 제 28 조 제 1 항 (a)호에 따라 신청하는 긴급 임시적 보전처분 신청과 관련된 비용.

### 40 중재판정부 수당

40.1 달리 합의되지 않은 한, 중재인들은 시간당 보수를 토대로 수당을 받는다.

40.2 시간당 보수는 당사자들과 중재인들 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가 이를 결정한다.

40.3 서면으로 달리 합의되지 않은 한, 시간당 보수는 재화용역소비세(GST), 부가가치세 또는 기타 부과될 수 있는 세금과 같은 것을 제외한다.

40.4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가 시간당 보수를 결정하는 경우,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는 무엇보다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 (a)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가 파악하는 범위 내에서, 분쟁의 성격 및 분쟁금액; 그리고
- (b) 중재인의 지위 및 경력.

#### 41 비용의 분담

- 41.1 규칙 제 41 조 제 2 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중재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사건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담함이 합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그러한 각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
- 41.2 규칙 제 39 조 (e)호에 규정된 비용과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사건의 사정을 고려하여, 어느 당사자가 그러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를 자유롭게 결정하거나 분담함이 합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그러한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
- 41.3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의 종료를 명하거나 화해 내용의 판정을 내리는 때에는, 중재판정부는 그 명령문 또는 판정문 상에 규칙 제 39 조에 규정된 중재비용을 정하여야 한다.
- 41.4 중재판정부는 규칙 제 36 조 내지 제 38 조에 의한 판정의 해석, 정정, 또는 추가 판정에 대하여 추가 수당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42 비용의 예납

- 42.1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부 구성 즉시, 규칙 제 39 조 (a)호, (b)호, (c)호, (f)호 및 (g)호에 규정된 비용에 대한 예납으로서 각 당사자에게 균등분할액을 예납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42.2 피신청인이 반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달리 사정상 적절하다고 보이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재량으로 따로 분리된 예납을 설정할 수 있다.
- 42.3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 진행 중에도 필요하면 당사자들에게 추가 예납을 요청할 수 있다.
- 42.4 중재판정부는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와 협의하여 그 승인을 얻은 후에만 예납금액 또는 추가 예납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 42.5 중재판정부는,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의 동의를 얻어,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가 관리하는 신탁계정에 예납금을 예치할 수 있다.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는 중재판정부의 지시에 따라 위 예납금을 지출하여야 한다.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는 신탁계정 이용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 42.6 요구된 예납금 납입 요청 수령 후 30 일 이내에 그 예납금이 전액 납입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상대방 또는 다른 당사자가 그 미납된 예납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한 예납금이 납입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의 중지 또는 종료를 명할 수 있다.
- 42.7 중재판정부는, 판정이 내려진 후, 예납금을 납입한 당사자들에게 정산서를 교부하고 지출되지 않은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 5 장: 일반원칙

### 43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의 결정

- 43.1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가 하는 결정은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한 자가 한다.
- 43.2 중재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의 결정은 종국적이고 당사자들 및 중재판정부를 구속한다.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는 어떠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 받지 아니한다.
- 43.3 당사자들은, 중재지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 법원 또는 기타 사법기관에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의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항고 또는 재심청구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 43.4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뿐만 아니라 그 회원, 임직원, 사용인 또는 대리인도 이 규칙에 의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어떠한 결정을 하지 못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44 중재판정부의 책임

중재판정부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에 입각하여 진행되는 중재와 관련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부칙 A: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의 요금

### 1 등록요금

- 1.1 이 규칙에서의 "달러" 또는 "\$"는 호주의 통화를 의미한다.
- 1.2 신청인은 중재 통지서를 제출하는 때에 등록요금 2,500 달러를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에 납입하여야 한다. 등록요금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 2 관리요금

- 2.1 당사자들은 별표 1 에 명시된 대로 관리요금을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에 납입하여야 한다.
- 2.2 분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 (a) 신청, 반대신청 및 상계항변은 합산되고;
  - (b) 이자 부분에 대한 청구가 신청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 부분에 대한 청구만이 분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 부분에 대한 청구 금액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 (c) 호주 달러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신청은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가 중재 통지서를 접수한 날에 적용되는 환율에 의해 호주 달러로 환산되고; 그리고
  - (d) 분쟁금액이 신청서 또는 반대신청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모든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분쟁금액을 결정한다.

### 3 긴급 중재인 수당

- 3.1 긴급 중재인 선정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그 신청서 제출 시에 긴급 절차 비용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 (a) 긴급 중재인 수당 - \$10,000; 그리고
  - (b) 신청요금 - \$2,500.
- 3.2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는 사건의 성격, 긴급 중재인 및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그리고 기타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그 비용을 증감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별표 1**

분쟁금액	관리요금
\$1 이상 \$500,000 이하	분쟁금액의 1%
\$500,001 이상 \$1,000,000 이하	\$5,000 + (\$500,000 를 초과하는 분쟁금액의 0.5%)
\$1,000,001 이상 \$10,000,000 이하	\$7,500 + (\$1,000,000 를 초과하는 분쟁금액의 0.25%)
\$10,000,001 이상 \$100,000,000 이하	\$30,000 + (\$10,000,000 를 초과하는 분쟁금액의 0.01%)
\$100,000,000 초과	\$39,000 + (최고 \$60,000 를 한도로, \$100,000,000 를 초과하는 분쟁금액의 0.02%)

**별표 2**

**1 긴급 임시적 보전처분 신청**

1.1 긴급 임시적 보전처분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부 구성 전에 긴급 임시적 보전처분을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1.2 긴급 임시적 보전처분 신청은:

- (a) 서면으로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에 제출되어야 하고;
- (b) 중재 통지서 제출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제출되어야 하며;
- (c) 가능한 경우, 그 신청을 하기 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모든 다른 당사자들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그리고
- (d) 모든 다른 당사자들에게 통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진술 또는 그 신청을 다른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선의로 취한 조치에 관한 석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1.3 긴급 임시적 보전처분 신청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요구되는 처분의 성격;
- (b) 그러한 처분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이유; 그리고
- (c) 당사자가 그러한 처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유.

1.4 긴급 임시적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부칙 A 에 명시된 대로 긴급 중재인 수당 및 신청요금을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에 그 신청과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 2 긴급 중재인 선정

- 2.1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는, 긴급 임시적 보전처분 신청서 접수 시에, 그 접수일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긴급 중재인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고 그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긴급 중재인 선정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장차 긴급 중재인으로 선정될 자는 그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만한 사정을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에 서면으로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긴급 중재인을 기피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그 중재인 선정 및 그 고지된 사정을 통지 받은 후 1 영업일 이내에 기피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2.2 긴급 중재인 선정에 관한 시기는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가 다음 각 호를 접수 완료하는 때까지 개시되지 아니한다:
- (a) 위 제 1 조에 따른 긴급 임시적 보전처분 신청서; 그리고
  - (b) 긴급 중재인 수당 및 신청요금의 납입.
- 2.3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긴급 중재인은 중재 본안 절차에서 중재인으로 활동하지 아니한다.
- 2.4 긴급 중재인이 선정된 경우,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는 그 신청을 긴급 중재인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 3 긴급 임시적 보전처분에 관한 결정

- 3.1 긴급 임시적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그 신청이 위 제 2 조 제 4 항에 따라 긴급 중재인에게 회부된 일자로부터 늦어도 5 영업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는 긴급 중재인의 요청 시에 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3.2 긴급 임시적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 (a) 서면으로 내려져야 하고;
  - (b) 결정이 내려진 일자가 기재되어야 하며;
  - (c) 결정이유를 포함하여야 하고; 그리고
  - (d) 긴급 중재인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 3.3 긴급 중재인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으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긴급한 임시적 보전처분(“긴급 임시적 처분”)을 명하거나 판정할 권한을 가진다.
- 3.4 긴급 중재인은 중재판정부 구성 전에는 언제든지 제시된 정당한 이유로 긴급 임시적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3.5 긴급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긴급 중재인이 긴급 임시적 처분을 명하거나 판정하기에 앞서, 다음 각 호를 긴급 중재인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 (a) 긴급 임시적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는 점;
- (b) 그러한 손해가, 긴급 임시적 처분이 허가되는 경우, 그 긴급 임시적 처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예상되는 손해보다 상당히 더 크다는 점; 그리고
- (c) 그 신청하는 당사자가 본안에 대하여 승소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점, 다만 이러한 가능성에 관한 판단은 차후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재판정부의 판단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6 긴급 중재인은 긴급 임시적 처분의 조건으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3.7 긴급 중재인은 각 당사자 및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에 긴급 임시적 보전처분 및 긴급 임시적 처분에 관한 결정문을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 4 긴급 임시적 처분의 준수

4.1 긴급 임시적 처분은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4.2 당사자들은 지체 없이 긴급 임시적 처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4.3 긴급 임시적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에도, 구속력이 소멸된다:

- (a) 중재판정부가 중국판정을 내리는 경우;
- (b) 신청이 철회되는 경우;
- (c) (어느 쪽이 적용되든) 긴급 중재인 또는 중재판정부가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 또는
- (d) 중재판정부가 긴급 임시적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선정되지 않는 경우.

#### 5 중재판정부 선정 후 권한

5.1 긴급 중재인의 관할권 및 권한은 중재판정부 선정 시에 즉시 소멸한다.

5.2 중재판정부는 긴급 임시적 처분을 재심,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5.3 중재판정부는 긴급 중재인의 결정 또는 그 이유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 6 비용

6.1 긴급 임시적 보전처분 절차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 (a) 긴급 중재인 수당 및 신청요금; 그리고
- (b)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한 법률 및 기타 비용.

- 6.2 긴급 임시적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 기한이 위 제 3 조 제 1 항에 따라 연장되는 경우,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는 부칙 A 에 명시된 긴급 중재인 수당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 6.3 긴급 임시적 보전처분 절차와 관련된 비용은 긴급 중재인에 의해 우선적으로 분담될 수 있고 이 규칙에 의하여 중재비용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7 기타

- 7.1 이 별표 2 에 의한 긴급 중재인의 권한은 관할법원 또는 기타 사법기관에 긴급 임시적 처분을 신청할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긴급 중재인에게 긴급 임시적 보전처분 신청이 회부된 후에 그러한 신청을 하거나 그러한 처분에 관한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그 신청인은 서면으로 긴급 중재인, 모든 다른 당사자들 및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7.2 긴급 중재인은 작위 또는 부작위가 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에 입각하여 진행되는 중재와 관련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칙 B: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의 연락처 세부사항**

**1 시드니 사무소 (주사무소)**

16 층, 카슬레이 가 1,  
시드니, 뉴 사우스 웨일즈 주 2000,  
오스트레일리아  
전화: +61 (0) 2 9223 1099  
팩스: +61 (0) 2 9223 7053  
전자우편: [secretariat@acica.org.au](mailto:secretariat@acica.org.au)

**2 멜버른 사무소**

버르크 가 470,  
멜버른, 빅토리아 주 3000,  
오스트레일리아  
전화: +61 (0) 3 9607 9311  
팩스: +61 (0) 3 9286 6460  
전자우편: [secretariat@acica.org.au](mailto:secretariat@acica.org.au)

**3 퍼스 사무소**

서호주분쟁관리원,  
사우스 가,  
머독,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 6150,  
오스트레일리아  
전화: +61 (0) 8 9360 7563  
전자우편: [secretariat@acica.org.au](mailto:secretariat@acica.org.au)

이 세부사항은 2011 년 8 월 1 일 현재 정확합니다.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 웹사이트([www.acica.org.au](http://www.acica.org.au))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Attention

These Rules were originally drafted in English. In the event of any inconsistency or difference between the English version and the Rules in any other language, the English version will prevail.

### 주의

이 규칙은 본래 영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규칙의 영어판과 다른 언어판 간에 불일치 또는 해석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판이 우선합니다.


### Acknowledgements

ACICA would like to thank Kyung-han Park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Seungmin Lee of Shin & Kim, who assisted Mr. Park in translating,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preparing the Korean version of the 2011 ACICA Arbitration Rules.

### 감사의 말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는 2011년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 중재규칙의 한국어판을 작성함에 있어서 번역작업을 수행한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의 박경한 및, 그를 도운, 법무법인 세종의 이승민 변호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 규칙 한국어판에 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대한상사중재원 박경한 전화 : 82-51-441-7038 팩스 : 82-51-441-7039 전자우편 : <a href="mailto:parkkh@kcab.or.kr">parkkh@kcab.or.kr</a></p>  <p><b>대한상사중재원</b>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p>	<p>법무법인 세종 이승민 변호사 전화 : 82-2-316-4639 팩스 : 82-2-756-6226 전자우편 : <a href="mailto:smilee@shinkim.com">smilee@shinkim.com</a></p> <p><b>SHIN&amp;KIM</b> 법무법인 세종</p>
--	---

Australian Centre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Level 16, 1 Castlereagh Street  
Sydney NSW 2000  
Australia  
Telephone: +61 (0) 2 9223 1099  
Facsimile: +61 (0) 2 9223 7053  
Email: [secretariat@acica.org.au](mailto:secretariat@acica.org.au)  
[www.acica.org.au](http://www.acica.org.au)

ISBN: 9780646559964  
All Rights Reserved  
©Australian Centre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2012

No part of the material protected by this copyright notice may be reproduced or utilis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or mechanical, including photocopying, recording, or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owner.